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장

제 38 호 2015. 4.10(금)

공 고

-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임대 희망자 공모 공고.....1
- 남원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고.....2
-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 공고.....22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공고23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공고 제2015-483호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임대 희망자 공모

전라북도와 남원시에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4. .

전라북도지사 남원시장

1. 공모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내 비어 있는 공가
-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등
- 예산지원 : **동당 최대 7,000천원** (초과비용은 건축주 개인부담)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 이하 전월세 임대
 - ※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지원금액 소진 시까지

2. 공모신청

-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건축과 방문 신청
 -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전라북도 및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가능
- 신청기한 : 2015. 4. ~ 목표물량 확보시까지

3. 선정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입주대상자별 접근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의지 등 확인) → 대상자 신청(남원시) → 대상자 확정(전라북도) → 리모델링 대상 결정 → 남원시장과 건물주간 협약체결 → 설계 및 공사계약 → 공사시행(준공) 및 지원금 집행 →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입주

4. 기타사항

- 전·월세 반값이란 전체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총 공사비 중 예산지원 부분은 간이 설계도서에 의해 산출된 공사금액으로 수의계약 하여 집행하되,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 공무원이 총괄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관할 남원시장과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반값에 최대 5년간 주택임대차계약을 함**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에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의 무임대기간 위반시에는 지원금을 반환**(반값임대기간 내 임차인 혜택비용 제외)하여야 함
- 입주자는 일괄 공모후 입주가 원칙이나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하는 경우도 가능함

5. 문의사항 : 남원시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건축과 주택담당자(☎620-6593)

남원시 공고 제2015 - 504호

『남원시 환경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시민의 자발적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를 구체화하여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사자의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안 제22조제1항)
- 나. 환경보전활동에 재정 지원 분야를 구체화하여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 (안 제23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30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환경과 환경행정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063-620-6709) 및 직접방문 등

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3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남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을 “남원시의 환경보전에 관한”으로, “이념과 시”를 “이념과 남원시”로, “시민”을 “남원시민”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시의 환경보전”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으로, “시민”을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영위함”을 “하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이라 함은”을 ““환경”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연환경”이라 함은”을 ““자연환경”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생활환경”이라 함은”을 ““생활환경”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타”를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을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식물”로, “생태계질서”를 “생태계 질서”로,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환경보전”이라 함은”을 ““환경보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다양성”을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 다양성”으로,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특히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수립하고

이를”을 “수립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이를 방지함”을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가공·판매과정”을 “제조·가공·판매 등 전과정”으로, “저감하여야”를 “줄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품 또는 기타”를 “제품, 그 밖에”로,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조하고 재정지원”을 “협조하고, 재정 지원”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히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사업활동으로 인하여”를 “사업활동으로”로, “야기한”을 “일으키는”으로, “환경훼손으로 인한”을 “환경훼손에 따른”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실천”을 “생활화”로, “교육”을 “환경교육”으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를 “조치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식의 전환과”를 “인식을 높이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 시민단체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남원시환경보전계획(이하)”를 “남원시 환경보전계획(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 중 “사업에 대하여”를 “사업은”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으로, “검토하고”를 “검토하고,”로, “강구·시행하여야”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로 한다.

제11조 중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를 “필요한 규제 조치를 마련 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시와”를 “시장과”로, “기본임에 비추어”를 “기본임을 알고”로, “유지 보전되도록”을 “유지·보전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4조 중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을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5조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포 함)에 대하여 남원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을 “포함)에 게 예산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제1항 중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을 “환경훼손에 따른 분 쟁, 그 밖에 환경 관련”으로, “환경훼손으로 인한”을 “환경훼손에 따른”으로,

“환경분쟁조정에 따른”을 “환경분쟁조정”으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야기한”을 “일으키는”으로,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을 “부담 원칙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책에 대하여”를 “시책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 등의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을 “환경보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기관 기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을 “교육기관, 그 밖에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으로, “깊게하고”를 “깊게하고,”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상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로,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등”으로, “수집에 노력함은 물론 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를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로, “그 과의”를 “그 성과의”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을 “위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으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시민의”를 “시장은”으로,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및 환경보전활동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재정지원”을 “재정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민, 사업장,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3. 시민, 사업자,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 중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를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보전실천의 활성화를 위하여”로, “행정이다함께 참여, 환경보전실천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행정으로 구성된”으로 한다.

제2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남원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념과 남원시----- 남원시민-----</u></p>
<p>제2조(기본이념) ① <u>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2조(기본이념) ①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하기-----</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과 같다.</u></p> <p>1. <u>“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u></p> <p>2. <u>“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u></p>	<p>제3조(정의) ----- <u>뜻은-----</u></p> <p>1. <u>“환경”이란-----</u></p> <p>2. <u>“자연환경”이란-----</u></p>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환경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

3. “생활환경”이란-----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이
나-----

5.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식
물-----
----- 생태계
질서-----
----- 등으로-----

6. “환경보전”이란-----

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1. ~ 8. (생략)
- 9.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 다양성-----

----- 모든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

----- 수립하고 -----

- 1. ~ 8. (현행과 같음)
- 9. 그 밖의 -----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
 ② (생 략)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
 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
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
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
동
2. ~ 5. (생 략)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
 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
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
훼손의 방지와 오염· 훼손된 환
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
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
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
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
 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음 각 호-----
 -----.

1. ----- 발견 시
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
할 기관-----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
 ----- 사업활동
으로-----

 - 일으키는 -----

 ----- 환경훼손에 따른---
 ----- 필요한---

 -.

제8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 생활화-----
 ----- 환경교육---

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
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
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
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
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
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
원시환경보전계획(이하 “보전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
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전계획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
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
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② -----
----- 인식을
높이고 -----
-----.

③ ----- 등은-----

-----.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

----- 남원시 환경보
전계획(이하 -----

-----.

② 제1항에 따른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
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
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④ (생략)

제10조(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 조치)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영향 검토) -----

----- 사업은-----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 검토하고,-----

--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
-.

제11조(규제 조치) -----

③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참여) 시장은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유공자(단체 포함)에 대하여 남원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

----- 마련하여야
-----.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

-----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

----- 마련하여야 -----.

제15조(시민참여) -----

----- 마련하여야 -----.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 등) ① -----

-----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 -----
-----.

②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함과 동
시에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
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에 따른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에 대한
책무를 진다.

제18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
-- 환경훼손에 따른 분쟁, 그
밖에 환경 관련 -----

----- 환경훼손에 따른-----
----- 환경분쟁조정에-----
----- 마련
하여야 -----.

② -----
----- 일으키는 -----
----- 부담 원칙에 따라-----

-----.

제1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
체와의 협력) ① -----
----- 시
책은-----

-----.

② 시장은 정부기관 및 다른 지
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 등의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의 공개) ① -----

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

----- 환경보전

----- . 다만,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
----- 등
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 교육기관, 그 밖에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깊게하고, -----

----- 마
련하여야 -----.

제2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

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상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절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은 물론 학제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 지역 내 -----

 ----- 정기
적으로 조사하여야-----

 ----- 관계 전문가-----

 -----.

② -----

 ----- 등 -----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 그 성과의 -----
 -----.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① -----
 ----- 위하여 시
책추진에 필요한 -----
마련하여야 -----.

② 시장은-----

 ----- 예산의 범위
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및 환경보전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 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4조(추진협의회 설치)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시민, 기업, 행정이다함께 참여, 환경보전실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재정 지원 -----
-----.

- 1. 시민, 사업장,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 개발
-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 3. 시민, 사업자,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추진협의회 설치)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보전실천의 활성화를 위하여 -- 행정으로 구성된--

-----.

제25조(시행규칙) -----
시행에-----
-----.

남원시 공고 제2015 - 512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10.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 간
- 2.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산113-1,113-4, 113-9 번지
- 3. 선정 면적 : 2,678 m²(지적 : 2,678 m²)
- 4. 목 적 : 개 전
- 5. 사업예정기간 : 2015. 5. . ~ 2016. 5. 31.
- 6. 사업시행자 : 남원시 운봉읍 화신길21 장호원
-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시설담당) (☎ 063-620-6386)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5 - 513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04월 10일

남 원 시 장

-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 2. 공 고 기 간 : 2015. 04. 10. ~ 2015. 04. 24
-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성명	주소	사유	자동차	비고
이*노	남원시 금암길	폐문부재	전북34*1915	
(유)보*철*	김제시 봉황로	이사	95* 8848	